

대법원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정화)은 2020. 7. 9. 유명 명품가방인 에르메스 버킨(birkin) 백과 켈리(Kelly) 백과 동일한 가방 형태의 제품이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차)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(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다217847 판결).

1.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

가. 사안의 개요

-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주장하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

원고들의 이 사건 상품표지	피고들 제품
	



나. 소송의 경과

이 사건 부경법 쟁점과 의견서

	제2조 1호 (가)목 (상품주체 혼동행위)	제2조 1호 (다)목 (식별력·명성 손상행위)	제2조 1호 (차)목 (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)
제1심	否定	否定	肯定
원심	否定	否定	否定

- ▣ 제1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가), (다)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, 같은 호 (차)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
- ▣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가), (다), (차)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
- ▣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음

2. 상고심의 쟁점 및 관련 법리

가. 쟁점

- ▣ 피고들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가), (다), (차)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나. 관련 규정

▣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●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·반포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 - 차.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제1호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중국관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,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판단 결과

- ▣ 파기환송[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호 (차)목 - 현재는 (카)목으로 변경됨 - 에 해당함]

라. 판단 근거

- ▣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상품표지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가)목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함
- ▣ 이 사건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넘어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같은 호 (다)목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함
- ▣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표지(켈리 백, 버킨 백)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

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차)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

- 원고들의 이 사건 상품표지(켈리 백, 버킨 백)는 국내에서 계속적·독점적·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,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,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음
-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들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·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,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
-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창작적 도안을 부가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
-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가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차)목[현 (카)목]을 인정하여 향후 핸드백, 패션업계에 개발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